



거창군
Geochang County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499호 2015. 9. 10. (목)

선 결	기관의 장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15-117호 거창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2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15-783호 거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안) 입법예
고 8

거창군 공고 제2015-791호 소하천의 점용·사용(기간연장) 허가 공고 23

거창군 공고 제2015-792호 소하천의 점용·사용(기간연장) 허가 공고 24

회 람									
--------	--	--	--	--	--	--	--	--	--

거창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1985-43호(1985.03.11) 및 경상남도 고시 제1980-173호(1980.07.14.)로 각각 최초 결정·고시된 거창군계획시설(동동,동호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거창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거창군청(도시건축과, 산림녹지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9월 10일

거 창 군 수

1. 거창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
2. 관계 도면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 불 입 】

거창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거창군관리계획(공원)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3	동 동 공 원	근린 공원	거창읍 대동리 542-4번지 일원	277,000	경고 제1985-43호 ('85.03.11)	
기정	15	동 호 공 원	근린 공원	웅양면 동호리 1069번지 일원	93,400	경고 제1980-173호 ('80.07.14)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I. 동동공원

1. 공원조성계획 총괄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67,000	277,000	100.0	100.0	370	200	370	200	
시설면적	10,920	38,638	16.3	13.9	370	200	370	200	
도로 및 광장	4,900	9,618	7.3	3.5	-	100	-	100	
조경시설	-	7,200	-	2.6	-	-	-	-	
운동시설	1,330	2,150	2.0	0.8	-	-	-	-	
휴양시설	1,130	5,400	1.7	1.9	-	-	-	-	
유희시설	380	1,720	0.5	0.6	-	-	-	-	
교양시설	2,590	-	3.9	-	310	-	310	-	
편익시설	590	12,550	0.9	4.5	60	100	60	100	
녹지면적	56,080	238,362	83.7	86.1	-	-	-	-	

2. 공원조성계획 세부시설 결정조서

1) 세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계			67,000	277,000	370	200	370	200	증)210,000
시설계			10,920	38,638	370	200	370	200	증)27,718
도로 및 광장	소계		4,900	9,618	-	100	-	100	증)4,718
	도로		3,327	8,968	-	-	-	-	증)5,641
	1-1	진입광장	210	650	-	100	-	100	증)440
	1-2	진입광장	170	-	-	-	-	-	감)170
	1-3	중앙광장	493	-	-	-	-	-	감)493
	1-4	광장	700	-	-	-	-	-	감)700
조경 시설	소계		-	7,200	-	-	-	-	증)7,200
	2-1	아트갤러리원	-	2,080	-	-	-	-	증)2,080
	2-2	가족정원	-	4,320	-	-	-	-	증)4,320
	2-3	폭포쉼터	-	800	-	-	-	-	증)800
운동 시설	소계		1,330	2,150	-	-	-	-	증)820
	3-1	체력단련마당	-	2,150	-	-	-	-	증)2,150
	2	체력단련장	1,330	-	-	-	-	-	감)1,330
휴양 시설	소계		1,130	5,400	-	-	-	-	증)4,270
	4-1	언덕피크닉장	-	2,950	-	-	-	-	증)2,950
	4-2	전망쉼터	-	770	-	-	-	-	증)770
	4-3	역사깊은전망대	-	1,400	-	-	-	-	증)1,400
	4-5	휴게쉼터1	-	150	-	-	-	-	증)150
	4-6	휴게쉼터2	-	70	-	-	-	-	증)70
	4-7	휴게쉼터3	-	60	-	-	-	-	증)60
	3-1	임간휴게소	128	-	-	-	-	-	감)128
	3-2	임간휴게소	38	-	-	-	-	-	감)38
	3-3	임간휴게소	36	-	-	-	-	-	감)36
유희 시설	소계		380	1,720	-	-	-	-	증)1,340
	5-1	언덕놀이터	-	1,720	-	-	-	-	증)1,720
	4	놀이마당	380	-	-	-	-	-	감)380
교양 시설	소계		2,590	-	310	-	310	-	감)2,590
	5-1	토산품전시장	200	-	160	-	160	-	감)200
	5-2	토산품전시장	100	-	70	-	70	-	감)100
	6-1	토산품전시마당	2,190	-	-	-	0	-	감)2,190
	6-2	토산품전시장	100	-	80	-	80	-	감)100
편익 시설	소계		590	12,550	60	100	60	100	증)11,960
	6-1	주차장1	-	1,720	-	-	-	-	증)1,720
	6-2	주차장2	-	830	-	-	-	-	증)830
	6-3	주차장3	-	10,000	-	100	-	100	증)10,000
	7	주차장	490	-	-	-	-	-	감)490
	8	관리사무소	100	-	60	-	60	-	감)100
녹지 및 기타	소계		56,080	238,362	-	-	-	-	증)182,282
	녹지		56,080	238,362	-	-	-	-	증)182,282

2) 도로 결정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등급	구분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총계	기정					3,327				
	변경					8,968				
소로	신설	3	1	6	372	2,232	진입로	동측구역계	6-1	
산책로	신설		1	3	441	1,323	산책로	소로3-1	소로3-1	
	신설		2	3	9	27	산책로	남측구역계	산책로1	
	신설		3	3	13	39	산책로	남측구역계	산책로1	
	신설		4	3	50	150	산책로	3-1	산책로1	
	신설		5	3	67	201	산책로	산책로1	4-3	
	신설		6	3	271	813	산책로	산책로10	산책로10	
	신설		7	3	404	1,212	산책로	6-1	산책로8	
	신설		8	3	250	750	산책로	6-3	산책로6	
	신설		9	3	60	180	산책로	산책로8	산책로10	
	신설		10	3	333	999	산책로	서측구역계	산책로7	
	신설		11	3	128	384	산책로	서측구역계	6-3	
	신설		12	3	120	360	산책로	남측구역계	소로3-1	
	신설		13	2	94	188	산책로	서측구역계	2-2	
	신설		14	2	55	110	산책로	2-1	2-2	
세로	폐지		1	6	146	874	진입로	중1-1	주차장	
	폐지		2	4	42	168	연결로	진입광장	중앙광장	
	폐지		3	3	36	108	연결로	진입광장	중앙광장	
	폐지		4	3	60	180	연결로	휴게광장	광장	
	폐지		5	2	126	252	연결로	진입광장	세로2	
	폐지		6	2	166	332	연결로	광장	체력단련장	
	폐지		7	1.5	522	783	연결로	경계	중앙광장	
	폐지		8	1.5	207	310.5	연결로	세로7	체력단련장	
	폐지		9	1.5	213	319.5	연결로	진입광장	중앙광장	

II. 동호공원

1. 공원조성계획 총괄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93,400	93,400	100.0	100.0	280	100	280	100	
시설계	31,842	27,215	34.1	29.1	280	100	280	100	
도로 및 광장	8,652	6,585	9.3	7.0	-	-	-	-	
조경시설	6,110	11,400	6.5	12.2	100	-	100	-	
휴양시설	5,310	3,930	5.7	4.2	-	-	-	-	
유희시설	5,010	1,300	5.4	1.4	-	-	-	-	
운동시설	320	-	0.3	-	-	-	-	-	
교양시설	5,480	3,600	5.9	3.9	-	-	-	-	
편익시설	960	400	1.0	0.4	180	100	180	100	
녹지및기타	61,558	66,185	65.9	70.9	-	-	-	-	

2. 공원조성계획 세부시설 결정조서

1) 세부시설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계		93,400	93,400	280	100	280	100	
시설계		31,842	27,215	280	100	280	100	감)4,627
도로 및 광장	소계	8,652	6,585	-	-	-	-	감)2,067
	도로	6,852	6,585					감)267
	진입광장	1,800	-					감)1,800
조경 시설	소계	6,110	11,400	100	-	100	-	증)5,290
	수변휴게원	-	8,580					증)8,580
	수로	2,820	2,820					-
	연못	2,950	-					감)2,950
	화단	340	-					감)340
	정자	-	-	100	-	100	-	-
	파고라	-	-					-
휴양 시설	소계	5,310	3,930	-	-	-	-	감)1,380
	나무그늘쉼터	-	1,000					증)1,000
	전망쉼터	-	1,100					증)1,100
	숲테라피원	-	1,700					증)1,700
	휴게쉼터1	-	30					증)30
	휴게쉼터2	-	100					증)100
	휴게광장	1,180	-					감)1,180

구분	시설명	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휴게광장	1,120	-					감)1,120	
		1,020	-					감)1,020	
		1,050	-					감)1,050	
		940	-					감)940	
		-	-					-	
		-	-					-	
	유희 시설	소계	5,010	1,300	-	-	-	-	감)3,710
		놀이터	1,270	1,300					증)30
		놀이마당	3,740	-					감)3,740
		그네	-	-					-
	운동 시설	소계	320	-	-	-	-	-	감)320
		다이나트랙	320	-					감)320
	교양 시설	소계	5,480	3,600	-	-	-	-	감)1,880
		잔디마당	-	3,600					증)3,600
		화계	804	-					감)804
		화계	636	-					감)636
		텃밭	3,990	-					감)3,990
		원두막	50	-					감)50
	편익 시설	소계	960	400	180	100	180	100	감)560
		입구마당	-	400	-	100	-	100	증)400 (화장실)
		매점	270	-	80	-	80	-	감)270
화장실		110	-	100	-	100	-	감)110	
음수대		-	-					-	
주차장		580	-					감)580	
녹지맞기타	소계	61,558	66,185	-	-	-	-	증)4,627	
	녹지맞기타	61,558	66,185					증)4,627	

2) 도로 결정조서

○ 군계획시설결정 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합계					2,740				
기정	소로	1	52	10	274	2,740	군계획도로	동호리 1069-1	동호리 1319	

거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7일

거 창 군 수

1. 조례명 : 거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안

2. 제정취지

- 「지역보건법」의 위임사항을 본 조례에서 정해 군민 보건의 안정성과 건강검진의 질을 높이고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과태료의 부과 기준 및 절차 규정(안 제2조~제11조)
 - 수납되는 과태료는 군 수입으로 환수
- 과태료 부과기준(안 별표)
 - ① 「건강진단 등의 신고」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예방접종, 순회진료를 행한 자
 - 1차 위반 : 100만원 / 2차 위반 : 200만원 / 3차 위반 : 300만원
 - ②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의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 1차 위반 : 100만원 / 2차 위반 : 200만원 / 3차 위반 : 300만원

4. 법적 근거

- 지역보건법 제26조 2항

5.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의 사항을 2015년 9월 30일까지 거창군수(참조: 보건소, 팩스번호 055-940-8309)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055 - 940 -8314)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거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정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기준 및 사무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대상)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행하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예방접종, 순회 진료 등을 행한 자
2.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의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한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 등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의견 제출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되 당사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과태료의 처분통지 및 납부통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납부기간 경과 후 1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과태료 감경) 군수는 당사자가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

제7조(이의제기 등) ① 제5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이의제기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르며, 군수는 별지 제7호 서식으로 관할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바로 관할 법원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강제징수) ① 제7조 1항에 따라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9조(과태료 수납부 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8호 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거창군 세외수입으로 한다.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가지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서 각각 부과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 다. 3차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3차위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행 위	해 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1. 법 제18조(건강진단 등의 신고) 위반 가. 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 또는 지역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및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나. 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허위로 신고하고 의료기관 외의 장소 또는 지역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및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6조 제1항제1호	100	200	300
2. 법 제21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의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26조 제1항제2호	100	200	300

[별지 제1호 서식]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문서번호 보건소-
시 행 일
수 신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6.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모사전송	
	제출기한						

경상남도 거창군수

(뒷면)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 서식]

문서번호 :

받는 곳 :

제 목 :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통지서

1. 귀하께서는 「지역보건법」 제 조 항을 위반하였기 「경상남도 거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의거 별지의 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부과 처분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 반 일 시			위 반 장 소	
위 반 사 항				
적 용 법 규				
과태료 금액			산 출 기 초	
납 부 기 한				

2.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성군수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 거창군수

[별지 제4호 서식]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고지금액	취소(변경)액	차 액	비 고
취소(변경)사유			
<p>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50px;">경상남도 거창군수 (인)</p>			

과태료납부독촉장

문서번호 :

받는 곳 :

제 목 : 과태료 납부 독촉

납 부 의 무 자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업소명(시설명)		
	주 소(소재지)		
과태료납부고지서 번호			
위 반 사 항			
과태료 금액		당초납부기일	
<p>1. 위의 과태료 금액이 년 월 일 현재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반드시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p> <p>2.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경상남도 거창군수 (인)</p>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제 호

수 신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장

발 신 : 거창군수 (인)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지역보건법」 제26조제4항과 관련입니다.

2. 「지역보건법」 제 조 위반자에 대하여 「경상남도 거창군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4조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당사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 통보하오니,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반사항	고지일자		과태료금액	
	부과관청		이의제기일자	
	과태료처분사유			
	본인의 불복사유			

첨 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끝.

과 태 료 부 과 징 수 대 장

일련 번호	고지서 번호	과태료 처분 통지일	독촉장 발부일	납부기한		금 액	납부의무자		과태료 납부일	이의제기	
				당초	독촉		성명	주소		이 의 제기일	법 원 통보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거창군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1. 미첨부 근거규정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
 1.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3억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의안의 내용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2.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조례로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3. 작성자

보건소장

(서명)

소하천의 점용·사용(기간연장)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소하천의 점용·사용(기간연장)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9일

거창군수

점용자	상호 및 명칭	-		
	대표자 (성명)	최병*	주소	경남 거창군 남상면 한산1길 **
소하천명		각골천		
점용 개요	위치	경남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467-157번지		
	면적	508.0㎡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15.01.01 ~ 2019.12.31		
	목적 및 사유	경작용		

열람서류 : 해당없음

소하천의 점용·사용(기간연장)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소하천의 점용·사용(기간연장)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9일

거창군수

점용자	상호 및 명칭	-		
	대표자 (성명)	김 유 *	주 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8길 **
소하천명		각골천		
점용 개요	위치	경남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467-158번지 외 3필지		
	면적	합 계		1,709.0㎡
		남상면 대산리 1467-158번지		1,068.0㎡
		남상면 대산리 1467-159번지		50.0㎡
		남상면 대산리 1467-160번지		392.0㎡
		남상면 대산리 1467-161번지		199.0㎡
기간	2015.01.01 ~ 2019.12.31			
목적 및 사유	기타(야적)			

열람서류 : 해당없음